

의안번호	제 46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6월 24일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안

의 안 번 호	461
------------	-----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 : 2020년 6월 24일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목적(안 제1조)
 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함
- 입법·법률고문 자문사항(안 제3조)
 - 자치법규 제·개정, 법령해석, 소송수행 등 자문사항 규정함
- 입법·법률고문 자문요청 절차(안 제4조)
 - 의원 및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요청 시 문서, 전화 등 자문방법을 규정함
- 위촉기간 사항(안 제5조)
 - 입법·법률고문 임기는 2년, 필요한 경우 재위촉 가능하도록 규정함

○ 입법·법률고문 지급수당 규정(안 제7조)

- 입법·법률고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함

○ 자문실적부 비치(안 제7조)

- 부서에서 자문요청한 사항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규정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○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
○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1.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 2.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
- ②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.
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자문사항)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사항
 2.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
 3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
-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 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사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
 3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

제4조(자문요청 등)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문에게 문서(전자메일 포함), 전화 등으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고문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촉기간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해제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
3.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4.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6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7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7조(수당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「충청북도 소송사건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자문실적부 비치) 제4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각 부서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승 낙 서

성명 :

생년월일 :

소속및직위 :

주소 :

상기 본인은 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에 따라
귀 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직위

성명

(인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제 호

위 촉 장

소 속 :

성 명 :

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」 제2조에 따라
귀하를 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20 ~ 20)

20 년 월 일

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자문처리 실적부

자 문 사 항				처 리 결 과		
연월일	건 명	의뢰인	의뢰내용	연월일	고문인	회신내용

※ 건명란에는 입법자문, 법령해석, 법령자문, 소송사건 등을 기재함.